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을 산입한다.
 -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합의제 행정기관은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인・허가 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제5항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합의제 행정기관은 ()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합의제 행정기관은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합의제 행정기관은 ()은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송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등)

②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자치법규는 ()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행정예고)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일 이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 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공공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 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 제3항에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명 이상으로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의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명 이내로 한다.
-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명으로 구성한다.
-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7조 제4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일

-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 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제20조(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시간적 효력 관련 법률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을 것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

<정답>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계산)

법령 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 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인ㆍ허가 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gong.conects.com

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 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 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 행정기 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 행 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 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 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송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 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 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등)

②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cafe.naver.com/sunnylaw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행정예고)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gong.conects.com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 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 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 제3항에 따 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 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 은 (4)명 이내로 한다.
-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 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 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 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7조 제4항 및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 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선정대표자)

cafe.naver.com/sunnylaw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 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제20조(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 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 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시간적 효력 관련 법률

헌법

제53조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